

1995. 7.

수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목 : 제천시의회 의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임시회에 별첨과

같이 발의합니다.

첨부 :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

2. 제천시의회 의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.

발의자 이광진의원



외 6 인

#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1995. 7.

발 의 자 : 이 광 진의원  
의 6인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시·군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청진동의 인구가 2만을 초과 함으로써 의원수가 1명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 조정하고자 함.
- 나. 1994. 3.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시·군의회의원 임기가 3년으로 규정 되어있어 상임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 "10명에서 11명이내"로 개정하고자 함. (제2조)
- 나. 1994. 3.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 위원의 임기를 "2년에서 1년 6월"로 개정하고자 함. (제5조)

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발의서명서

의원	서명	날인
이강진		
김세래		
嚴泰九		
張孝勳		
尹長沕		
박여길		
박종우		

#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제2호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총무위원회 11명이내
3. 개발위원회 11명이내

제5조(상임위원회 임기) 제1항중 "2년"을 "1년 6월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총무위원회 <u>10명</u></p> <p>3. 개발위원회 <u>10명</u>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11명이내</u> 3. ----- <u>11명이내</u></p>
<p>제5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<u>2년</u>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①----- ----- <u>1년6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